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51273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박종일, 이지훈

피고B

변론 종결 2021. 5. 26.

판결 선고 2021.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8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4년 및 1995년 경 C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D 등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부산지방법원 98가단71770호로 D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61068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다시 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90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477,984원 및 177,443,820원에 대하여 1998. 10. 12.부터 2009. 6. 23.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2019. 7.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8.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어머니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4. 26. 기준 시가는 495,908,000원, 2020. 12. 14.기준 시가는 544,502,000원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5. 8. 7.접수 제46210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1억 원), 같은 등기소 2006. 12. 26. 접수 제140143호로 채권 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실제 채무액 8천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E은 양도소득세 등 170,000,000원을 체납하였고, 동매문세무서는 2010. 7.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F 등 3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의 합계는 48,000,000원이다.

바. E은 2019. 4.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 G이 있으며 상속분은 각 1/3이다. 사. 피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 들은 2019. 4.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7. 22. 접수 제5568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한편, E은 D의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H은행은 위 연대보증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4. 30.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9. 5. 14.경부터 2019. 8. 21.까지 H은행에 5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H은행은 2019. 8. 23. E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인데, 2019. 4. 26. 협의분할을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544,502,000원)에서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180,000,000원), 체납 양도소득세(170,000,000원), 임대차보증금(48,000,000원)을 각 공제하고, 소외 C의 상속분(3분의 1)으로 나눈 가액은 48,834,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8,83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C이 운영하는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분할은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당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가액은 495,908,000원이고 여기에서 사해행위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180,000,000원), 체납 양도소득세(170,000,000원), 임대차보증금(48,000,000원)을 각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가액은 97,908,000원인데, 그 중 C의 상속지분(1/3)은 32,636,300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C이 운영하던 D의 채무 5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544,502,00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C의 상속 지분 가액은 48,834,000원이 되어 결론은 동일하다). 또한 D의 위 채무를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C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박성인

별지